

감 사 78

문서번호	자자 5011- 625	보존기간	이 사 부총재 총 재
처리기한	1995. .	영구	
기 안	1995.12. 5		
발 신	1995. .		
조사역	과 장 부부장 부 장	1995. 12. 15 12/15 12	
기 안 자	김 재 호 합	(법규과)기획부장	『직무권한 분류표』 제1장 제1절 제1항 제4호
소 속	자 금 부 자 금 과		
직 위	행원(중) 전화 4503 의		
수 신			
참 조			
제 목	「금융기관 여신운용세칙」 등 개정		
「금융기관 여신운용규정」 중 금융기관의 편중여신관리 관련 규정이 기존의 은행감독 규정을 통폐합하여 새로 제정하는 「금융기관 감독규정」으로 이관됨에 따라 관련 세칙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고자 합니다. 붙임 1. 「금융기관 여신운용세칙」 개정(안) 1부 2. 「한국은행 총액한도대출관련 상업어음할인 취급세칙」 개정(안) 1부 3. 「한국은행 총액한도대출관련 무역금융 취급세칙」 개정(안) 1부 4. 「한국은행 총액한도대출관련 소재·부품 생산자금대출 취급세칙」 개정(안) 1부 5. 「한국은행 총액한도대출의 지점별 한도 운용세칙」 개정(안) 1부 6. 「중소기업에 대한 여신운용세칙」 개정(안) 1부. 끝.			
사본수신처 한국은행 행내 021-10('80.11.19) ()		발 송 업무 연혁 기록 필요 불요 타 자	

(결재서식)

「金融機關 與信運用細則」改正(案)

現 行	改 正 (案)	備 考
제1조(목적) 이 세칙은 「금융기관 여신운용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2장 및 제4장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세칙은 「금융기관 여신운용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금융기관 여신운용 규정」상의 장 구분 페이지에 따른 조문 정비
제2조~제4조 (생략)	제2조~제4조 (현행과 같음)	- 「금융기관 여신운용 규정」개정에 따른 조문정비
제5조(담보취득제한의 예외 등) ① 「규정」 제3조의 2에서 한국은행총재가 담보취득제한의 예외로 인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을 말한다.	제5조(담보취득제한의 예외 등) ① 「규정」 제4조에서 한국은행총재가 담보취득제한의 예외로 인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을 말한다.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
2. 현지법인에 대한 역외금융취급이나 현지금융과 관련된 지급보증 취급시 모기업명의 국내부동산 (단, 「규정」 제3조의 2 제1호 내지 제5호에서 정한 부동산 제외)의 담보취득	2. 현지법인에 대한 역외금융취급이나 현지금융과 관련된 지급보증 취급시 모기업명의 국내부동산 (단, 「규정」 제4조 제1호 내지 제5호에서 정한 부동산 제외)의 담보취득	"
3. (생략)	3. (현행과 같음)	"
4. 농어민에 대한 농수축산자금 및 소액가계자금대출 취급과 관련한 「규정」 제3조의 2 제4호 및 제6호에서 정한 유희 토지 등 및 제3자명의 부동산 (단, 「규정」 제3조의 2 제1호 내지 제5호에서 정한 부동산 제외)의 담보취득	4. 농어민에 대한 농수축산자금 및 소액가계자금대출 취급과 관련한 「규정」 제4조 제4호 및 제6호에서 정한 유희 토지 등 및 제3자명의 부동산 (단, 「규정」 제4조 제1호 내지 제5호에서 정한 부동산 제외)의 담보취득	"
5. (생략)	5. (현행과 같음)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
제6조~제8조 (생략)	제6조~제8조 (현행과 같음)	"
(신설)	부 칙	"
	이 세칙은 1996.1.1부터 시행한다.	- 시행일자 명시